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2.22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구조개선정책과		
책임자	전요섭 과장(2156-9450)	담당자	안남기 사무관(2156-9453)
배포일	2016.2.19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

제 목 :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1 개정배경

□ '15.12월 「예금자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

○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

* 입법예고 : '16.2.22일 ~ 4.1일(40일간)

2 주요내용

가. 개정 예금자보호법('15.12.22일 시행) 위임사항

①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(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)

【법 개정사항】

§ 2.2.다.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

○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㉠ 보증준비금과 ㉡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제와 일치되도록 규정

[보험업권에 대한 예보료 부과 기준]

구 분	일 반 보 험	변 액 보 험
㉠ 책임준비금	(보험료적립금 등)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등	(보증준비금)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
㉡ 수입보험료	(수입보험료)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	(최저보증비용)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
예보료 부과기준	{(㉠ + ㉡) / 2} × 예보료율(0.15%)	

②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(안 제2조제3항)

【법 개정사항】

§ 2.1.사.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·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

○ 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·중개 전문회사¹⁾ 및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²⁾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(附保金融會社)에서 제외

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㉠ 채무증권, 국채증권·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, 사채권에 한하여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, ㉡ 환매조건부매매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

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클라우드펀드 중개업자

③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(안 제15조의2 신설)

【법 개정사항】

§ 29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
§ 29④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

- 비보호 예금자*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, 설명·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,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

* 정부, 지자체, 한은, 금감원, 예보, 부보금융회사(시행령 제3조)

④ 과태료 체계 정비(안 제26조 및 별표 3)

【법 개정사항】

§ 44① 이해관계인 조사 거부·방해 또는 기피시 → 500만원 이하* 과태료
 * 개정 전 200만원 이하
 § 44②3. 설명의무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→ 200만원 이하 과태료

-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·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

[위반 행위별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]

구 분	위 반 횟 수	1회	2회	3회 이상
① 부실책임자 이해관계인 조사 거부·방해(개정)		100만원	250만원	500만원
	(종전)	(50만원)	(100만원)	(200만원)
② 설명의무 위반시 (신설)		30만원	70만원	150만원

⑤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(안 제16조제5항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)

【법 개정사항】

§ 30⑥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·오납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급

-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(특별기여금 포함)를 과·오납한 경우, 국제 기본법에서 정한 국제환급가산금의 이자율('16.1월 현재 연 2.5%)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

* 국민연금법,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급이자율과 동일

나.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

① 출연금*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(안 제14조제1항, 제3항)

* 예금보호대상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예금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부(일종의 가입비)

- (현행) 영업 또는 설립 인·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,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

- (개선)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 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,

-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,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·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

[출연금 납부기준 개선안]

	현 행	개 선
납부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 • 신규로 부보금융회사에 편입된 때 •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·허가를 받은 경우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 인·허가를 받은 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어 영업 또는 설립 인·허가를 받은 때 •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금융회사 • 정리금융회사

② 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(안 제14조제1항, 제4항)

- (현행) 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

- (개선) 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**최저자본금**으로 부과기준 변경

* 영업인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이 커질 경우, 차액을 추가로 납부

<참고1>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

- (납입자본금)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
 - (최저자본금) 금융회사가 인·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
- ⇒ 항상 "납입자본금 ≥ 최저자본금"

<참고2> 시행령 개정 전후 출연금 납부 사례 예시

사 례	현행	개정안
시중은행 신설시 (최저자본금 1,000억원)	A 은행 (납입자본금 3,000억원)	예보 출연금 30억원 (납입자본금*1%)
	B 은행 (납입자본금 2,000억원)	예보 출연금 20억원 (납입자본금*1%)
		예보 출연금 10억원 (최저자본금*1%)
		예보 출연금 10억원 (최저자본금*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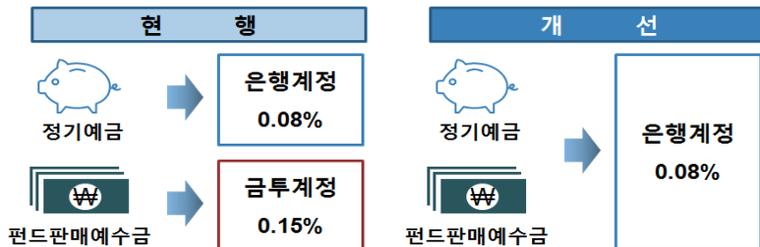
③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(별표 1)

- (현행) 겸업 금융회사의 경우, 단일 금융회사라도 **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**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,
 -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*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

* 보호한도(회사별 5,000만원), 보험사고 발생시 자금지원 등

- (개선)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**본업기준으로 일원화**

<참고> 겸업 금융회사 예보료 수납 개선 예시



④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 관리제도 개선(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)

- (현행)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**경영정상화 이행 약정(MOU)의 수익성 지표**에는 **수익결과 지표** 외에 **비용 통제적 지표** 등이 포함되어 있음
- (개선) **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**, 경영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**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**

* MOU 제도개선 방안(15.10.2,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)에 따라 기 입법예고(15.11.25)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임

3 | 향후 추진일정

- 입법예고(2.22~4.1, 40일간) 후 규개위·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

※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